

안산시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9

제출년월일 : 2010. 8. / 6.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민선5기 출범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신설과 기능 쇠퇴로 인한 통폐합 등 실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상위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한 위임 사무의 변동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총무과 소관 구청 소속 6급 담당(계장)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6급 이하에서 7급 이하로 조정함(안 별표2).
- 나. 세정과 소관 주택가격확인서 및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의 민원서류 발급이 용이하도록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안 별표2).
- 다. 생명산업과 소관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2).
- 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경로당 비품 및 물품 지원, 장애인 연금 신청 접수 등 집합적 성격의 단위 사무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안 별표2).
- 마.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은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확인 조사”는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수임 기관을 변경함(안 별표2).
- 바. 가족여성과 소관 한부모 가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2).
- 사. 건축과 소관 건축물 허가·신고 및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행정조치 사무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권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2).
- 아.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사항 및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관련 법조항을 변경함(안 별표2).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0. 7. 23. ~ 8. 2.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사무의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 과장 직위 성명	총무과장 박석운
	담당 팀장 직위 성명	조직교육담당 전덕주
	담당자 성명 전화	김수진 (☎3106)

사업소장 · 구청장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총무과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2.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 허가 1.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 전보, 휴직, 복직에 관한 사항 2. 정기 호봉승급 및 재획정 3. 청원경찰 배치	•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 같은 조례 16조, 제17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구청장
자 치 행정과	1.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자원봉사자 운영 2.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구청장
문화 관광과	1. 게임 · 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3.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4. 노래연습장업 등록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및 등록 7. 신고증 · 등록증 ·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8. 신고 · 등록 · 허가사항의 변경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구청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문화 관광과		9. 영업의 승계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구청장
		10. 폐업 및 직권말소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11. 사후관리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12. 허가 취소 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13. 행정처분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14. 과징금의 부과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5. 폐쇄 및 수거 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	
		16. 과태료 부과 · 징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99조	
		17. 게임물 관련 사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등 교육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18.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19. 모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지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세정과	1. 시세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납세의 고지	· 지방세법 제25조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시세조례 제6조	구청장
		2. 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3. 납기전 징수	· 지방세법 제26조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시세조례 제6조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지방세법 제26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시세조례 제7조	
		5. 물납, 분납	· 지방세법 제26조의3, 제26조의4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 · 시세조례 제6조	
		6.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법 제27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시세조례 제6조	
		7. 체납처분	· 지방세법 제28조 · 시세조례 제6조	
		8. 결손처분	· 지방세법 제30조의3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시세조례 제6조	
		9. 교부청구	· 지방세법 제34조 · 시세조례 제6조	
		10.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법 제40조 ·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시세조례 제6조	
		11. 시세징수유예 등(고지 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	· 지방세법 제41조내지 제44조 · 시세조례 제6조	
		12. 과오납금의 처리 (환부이자 계산)	· 지방세법 제45조내지 47조 · 시세조례 제6조	
		13. 시세의 소멸시효	·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30조의 6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 · 시세조례 제6조	
		14. 서류의 송달	· 지방세법 제51조, 제51조의 2 ·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2 · 시세조례 제12조의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세정과		15. 공시송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5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시세조례 제13조 	
		16. 징수촉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56조 ·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시세조례 제6조 	
		17. 공 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2조 · 시세조례 제6조 	
		18.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4조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19. 시세납세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3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20.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1.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2. 수입증지판매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3.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2.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3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동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경 제 정책과	1. 담배소매인 지정	1.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청장
		2.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3. 담배소매인 휴폐업신고 수리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4.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	
	2.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권한	1. 국내 무·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폐지신고	· 직업안정법 제1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2. 국내 무·유료직업소개 사업 지도단속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3. 국내 무·유료직업소개 사업 행정처분	· 같은법 제46조 내지 제50조	
	3. 혼위구인 광고	1. 혼위구인광고 지도단속	· 직업안정법 제34조	
녹 색 성장과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개선명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구청장
		2.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 같은법 제16조	
		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 (수시) 검사	· 같은법 제19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등	· 같은법 제27조	
		5.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같은법 제29조	
		6. 보고·조사 등	· 같은법 제38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52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같은법 제17조	
		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 같은법 제27조	
	3.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 같은법 제29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54조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업무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생 명 산업과	1. 농지이용및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처분의 의무통보 및 부과	· 농지법 제10조	구청장
		2. 농지처분 명령 및 매수 청구	· 농지법 제11조	
		3.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 농지법 제20조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5. 농지임대차 관리	· 농지법 제23조	
		6. 농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제54조 · 농지법시행령 제5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1. 농지원부의 작성 및 비치	· 농지법 제49조	
		2. 농지원부 교부 및 열람	· 농지법 제50조	
		3. 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5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3.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사항	1. 영업신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2.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3.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제45조, 제4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4. 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수의 위촉 및 운영	· 안산시 공수의 조례	
주 민 생활과	1.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구청장
	2.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접수 및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동 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사 회 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구청장
		2. 급여의 변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34조	
	2. 보장비용의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및 징수 · 독촉 (단, 자활급여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2.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5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3.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의료급여증 관리 (발급, 변경, 재발급)	· 의료급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부터 제14조	
		3. 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부터 제24조 · 의료급여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4. 행려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의료급여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5. 저소득장애인 복지 급여에 관한 권한	1. 장애수당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2.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4. 장애인월동난방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6조	
	6.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권한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7.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업무에 관한 권한	1.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9.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노령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2. 노인 장수수당 지급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10.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 노인복지법 제4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사 회 복지과	11.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1. 노인 건강진단 실시	· 노인복지법 제27조	구청장
	12. 경로당 신고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경로당 설치 및 폐지신고 수리	· 노인복지법 제37조	
	13. 경로당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2.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3. 경로당 비품 및 물품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복지법 제45조, 제47조 ·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4조	
	14. 경로당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 노인복지법 제4조	
	15.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16.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연금신청자에 대한 조사 2. 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 보장시설 입소 수급 장애인제외 3. 장애인연금 지급 및 환수 ※ 보장시설 입소 수급 장애인제외	· 장애인연금법 제9조 · 장애인연금법 제11조 · 장애인연금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7조	
	17.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18.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동장
	19.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부터 제24조	
	20.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	1.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1.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 장애인연금법 제8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가 족 여성과	1.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 보육시설 설치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구청장
		2. 보육시설의 명칭, 대표자, 정원 또는 소재지 변경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2.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 17조 부터 제2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2. 보육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3. 보육시설의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부터 제4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부터 제39조	
	3.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2.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4.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1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부터 제9조	
	5.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의 조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2. 한부모가족 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6.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동장
	7.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 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2. 복지자금 대여 신청서 접수 및 관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체 육 진흥과	1.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청장
		2.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 같은법 제27조	
		3.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 같은법 제32조제2항	
		4. 수수료 징수	· 같은법 제37조	
		5. 벌칙및양벌규정에 의한 조치	· 같은법 제38조, 제39조	
		6. 과태료 처분	· 같은법 제40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식 품 위 생 과	1. 공중위생영업,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3.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4. 보고 및 출입 검사 5.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6. 공중위생업소의 폐쇄등 7. 과징금 처분 8.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9. 위생교육 10.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3조	구청장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 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2. 영업의 폐업 신고 3. 영업허가등의 제한 4. 영업의 지위승계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38조 · 식품위생법 제39조	
	3. 집단급식소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집단급식소 신고	· 식품 위생법 제8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출입, 검사, 수거 등 2. 건강진단 3. 위생교육 4. 위생등급 5.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의 개수명령 등 6.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 (집단급식소는 해당없음) 7. 포상금 지급 8. 벌칙사항 9. 과태료	·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제47조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2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 식품위생법 제90조 · 식품위생법 제93조부터 제98조 · 식품위생법 제101조	
	5. 매 · 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매장 · 화장 및 개장신고 2. 공설매장 · 화장장 또는 납골장의 매 · 화장 납골 증명 3.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4.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징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동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획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리 및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구청장
	2.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후 실태조사 2. 과태료부과·징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 같은법 제144조	
		3.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4.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항 · 같은법 제122조	
	3. 토지거래 규제	1. 토지거래 계약의 검인 수리 2. 과태료의 부과·징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	
	4. 개발행위 허가	1.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미만) 2. 토지분할허가 (면적 5,000㎡미만) 3. 토석채취허가 (부피 1,000㎥미만) 4. 물건적치허가 (면적 1,000㎡미만) 5. 공작물 설치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도 시 디자인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림간판,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구청장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 신고 수리에 관한사항 (다만, 2개구 이상에 표시 하는 광고물 제외)	· 같은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9조	
		4.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5.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같은법 제17조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법 제10조	
		7. 행정대집행의 특례	· 같은법 제10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8.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 및 신고의 반려	· 같은법 제13조	
		9.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10.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20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p>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 행정조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한다)</p> <p>2. 공동주택위반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3. 건축물 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에 관한 권한</p> <p>5. 옹벽 등의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p> <p>6. 건축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1. 위반건축물정비계획 수립 · 시행</p> <p>2.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및 지도 단속</p> <p>3. 위반건축물행정조치 (행정대집행 · 계고 ·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등)</p> <p>1. 공동주택 복리시설(단지내 상가 등)의 무단 용도변경 및 중 · 개축에 대한 지도(단속) · 감독</p> <p>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 변경에 관한 권한 (단, 증축의 경우 허가 신고 전의 층수 및 연면적 으로 함)</p> <p>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p> <p>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p> <p>1.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p> <p>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7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 건축법 제3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79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106조 부터 건축법 제1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59조 · 주택법 제9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8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38조 	구청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건설과	1.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권한 4.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5.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 노점상관리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7.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8. 노점상생업자금융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허가 1.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2. 도로점용부분의 원상회복 3. 권리의무승계신고 1. 허가 취소 2. 허가조건의 변경 3. 공사중지의 명령 4. 공작물의 개축명령 5. 물건의 이전명령 1. 도로무단점용자의 지도 단속 2.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운행제한차량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1. 노점상 지도단속 1. 노상적치물 단속 1. 융자금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2. 융자금 상환에 대한 조치	· 도로법 제38조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제43조 · 도로법 제4조 · 도로법 제83조 · 도로법 제38조 · 도로법 제101조2 · 도로법 제23조 · 도로법 제101조2 · 도로법 제59조 · 도로법 제45조 · 도로법 제45조 · 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 풍수해보험법 제33조	구청장
재 난 안전과	1. 재해·재난관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 및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구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2. 설해예방대책 및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대책 강구 1. 보험료 지원, 손해평가 관련 업무 지원 2. 대상시설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통계자료 집적 3. 보험가입 안내·홍보, 가입자 관리 등		구청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운행차의 점검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제1항	구청장
		2.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3. 운행차의 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2.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	
		3.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허가 및 허가의 취소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 8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4.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5.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6. 특정공사 사전 신고의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7. 생활소음·진동발생자에 대한 필요조치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8.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및 조치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9.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10. 교통소음·진동 규제 지역내에 대한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청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11.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12. 과태료의 부과		·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 등 2. 부담금의 경감 3. 분할납부 등 4. 가산금 및 독촉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8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구청장
	2. 공영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처리 2. 공영주차장(노외 · 노상 · 임시) 관리 및 유지보수 ※ 유료주차장 제외	· 주차장법 제1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제15조	
	3.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 변경에 관한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서 부설주차장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단서)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제29조, 제32조	
녹 색 교 통 과	1. 주정차위반에 관한 권한	1. 주정차위반 단속 및 이의 신청 2.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관리, 감액처리 및 암류 해제 3. 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4. 주정차지도에 관한사항 5. 장기 미 반환 차량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동법 시행령 제11조 ·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구청장
	2. 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관한 사항	1. 방치차 조사 및 강제처리 2. 범칙금 부과 및 징수 등 범칙행위자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내지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8조 내지 제160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총무과	1. (생략)	1. (생략)	1. (생략)	의회사무국장

[별표2]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총무과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2 (생략)	(생략)	구청장
	2.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진보·휴식·복식에 관한 사항 (다만 6급의 휴식복식은 제외)	(생략)	
	2. (생략)	· 정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2	(생략)	
자치 행정과	1. (생략)	1~2 (생략)	(생략)	

개정안

[별표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총무과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의회사무국장

[별표2]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총무과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2.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진보·휴식·복식에 관한 사항 (다만 6급의 휴식복식은 제외)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현행과 같음)	
자치 행정과	1. (생략)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세정과	1. 시세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19. (생략)	(생략)	구청장
	20.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설)		
	2. (생략)	1. (생략)	(생략)	
3.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납세(징수유예·미과세) 증명서 발급	(생략)	동장	
	(신설)	(신설)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세정과	1. 시세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20.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1. 주택가격 환산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3.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랑세 납세증명서 발급 2.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경제 정책과	1~3. (생략)	(생략)	(생략)	구청장
	4.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개선명령 2.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수시) 감사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감사 등 5.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6. 보고·조사 등 7.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22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52조	
	5.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2.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54조	
	6. 특장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시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업무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7. 특장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8. 특장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9. 특장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경제 정책과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4.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개선명령 2.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수시) 감사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감사 등 5.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6. 보고·조사 등 7.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22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52조	
	5.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2.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54조	
6. 특장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시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업무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업무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7. 특장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8. 특장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문화 관광과	1. (생략)	1.~20. (생략)	(생략)	구청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생명 산업과	1. 농지이 용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5. (생략)	(생략)	구청장
		(신설)	(신설)	
	2~4. (생략)	(생략)	(생략)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주민 생활 지원과	1. (생략)	1.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구청장
	2. 양(양)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공·임대주택 임주예·정사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3. 저소득층 생업자금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복지대상자 사금대여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4.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활사업 위탁의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사회 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복지대상자시설 입소 의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	구청장
	2. (생략)	1~2. (생략)	(생략)	
		3. 급여신청(한정) 결과 통지	(생략)	
	3. (생략)	1.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4.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제24조	
	5.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의 권리	1. 지원대상자 현상조사 2.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지원대상자의 사후조사	·긴급지원법 제8조 ·긴급지원법 제13조	
	6~7. (생략)	(생략)	(생략)	
	8. 저소득장애인 복지 급여에 관한 권리	1~3. (생략)	(생략)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문화 관광과	1. (현행과 같음)	1~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생명 산업과	1. 농사이용 đất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6. 농지 불법행위 저지·제지 및 행정처분	·농지법 제42조 ·농지법 제44조 ·농지법 시행령 제48조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주민 생활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2. 저소득층 생업자금 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리	1. 복지대상자 사금대여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삭제)	(삭제)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사회 복지과	(삭제)	(삭제)	(삭제)	구청장
	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19.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리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부터 제24조	
	(삭제)	(삭제)	(삭제)	
	3~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저소득장애인 복지 급여에 관한 권리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사 회 부서과	9~12. (생략)	(생략)	(생략)	구청장	사 회 복지과	6~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13. (생략)	1~11. (생략)	(생략)		식품 위생과	1.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1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제5호나목(5)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식품 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영업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 2.영업의 폐업 신고 3.영업허가증의 세관 4.영업의 자료승계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5조		식품 위생과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영업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 2.영업의 폐업 신고 3.영업허가증의 세관 4.영업의 자료승계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5조	구청장	
	15. 침수급식소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생략)	·식품 위생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식품 위생과	3. 침수급식소설치에 대한 나漏의 권한	1. (현행과 같음)	·식품 위생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1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집객업 침수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생략)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집객업 침수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2. (생략)	·식품위생법 제22조			2.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제22조			
		3. (생략)	·식품위생법 제22조			3.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제22조			
		4. (생략)	·식품위생법 제22조			4.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제22조			
		5. (생략)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23조			5.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23조			
		6. (생략)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6.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7. (생략)	·식품위생법 제22조			7.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제22조			
		8. (생략)	·식품위생법 제24조부터 제27조			8.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제24조부터 제27조			
		9. (생략)	·식품위생법 제22조			9.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제22조			
17.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략)	(생략)			사 회 복지과	9.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에 관한 나漏의 권한	1.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구청장	
	2. 노인봉수당 지급	·노인봉지법 제26조				10 ~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생략)	(생략)				13. 경로당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운영 노동비 지원 ·노인봉지법 제23조 ·노인봉지법 제24조	·노인봉지법 제23조 ·노인봉지법 제24조		
	18.~20. (생략)	(생략)	(생략)			2.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노인봉지법 제27조	2. 경로당 비용 및 물품 지원 ·안전기 경로당 지원금 제4조	·노인봉지법 제27조		
21. 경로당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운영 노동비 지원	·노인봉지법 제23조				3. 경로당 비용 및 물품 지원 ·안전기 경로당 지원금 제4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노인봉지법 제24조				14.~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16.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한 조사 2. 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 보장시설 입소 수급 장애인제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장애인연금법 제1조		
	22.~23. (생략) (신설)	(생략)	(생략)			3. 장애인연금 지급 및 완수 ※ 보장시설 입소 수급 장애인제외	3. 장애인연금 지급 및 완수 ※ 보장시설 입소 수급 장애인제외	·장애인연금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신설)	(신설)			17.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구청장	
		(신설)	(신설)			18.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동 장	
		(신설)	(신설)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4.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동 장	식품 위생과	5.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 장	
25.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안산시 정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2. 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	(생략)					4. (현행과 같음)	·안산시 정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26.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 (생략)	(생략)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 장	
	3. (생략)	·안산시 정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21.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4. (생략)	·안산시 정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27. (생략)	(생략)	(생략)			사 회 복지과				동 장	
	(신설)	(신설)	(신설)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가 족 여성과	8.~9. (생략)	(생략)	(생략)	구청장	가 족 여성과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10.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생략)	(생략)			3.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신설)	(신설)			2.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35조		
	11. (생략) (신설)	(생략)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5.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의 조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12.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접수 조사 및 사후관리	(생략)	동상		2. 한부모가족 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신설)	(신설)	(신설)			6.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접수	(현행과 같음)	동상
		(신설)	(신설)			7.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 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2. 본지자금 대여 신청서 접수 및 관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같은법 시행 규칙 제88조, 제9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스포츠 마케팅과	1. (생략)	1.~7. (생략)	(생략)	구청장	체육 신체·과	1.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2. 운동장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의 권한	1. 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승인(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조 및 제4조			(삭제)	(삭제)	(삭제)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시 구 환경과	1. (생략)	1.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제9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제1항	구청장	환경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제9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제1항	구청장
		2.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 소음·진동구제법 제38조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3.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 소음·진동구제법 제39조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1. (생략)	1.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15조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2. (생략)	2.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16조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	
		3.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 8조 · 소음·진동구제법 제17조			6.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 8조 · 소음·진동구제법 제17조	
		4.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18조			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5.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20조			8.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6.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22조			9.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7.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21조			10.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8.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24조			11.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9.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25조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10.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26조						
		11.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47조						
		13. (생략)	· 소음·진동구제법 제59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도시 계획과	1.~4. (생략)	(생략)	(생략)	구청장	도시 계획과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도시 디자인과	1. (생략)	1.~10. (생략)	(생략)	구청장	도시 디자인과	1.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건설과	1. (생략)	1. (생략)	· 도로법 제40조	구청장	건설과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38조	구청장
		1. (생략)	· 도로법 제43조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41조	
	2. (생략)	2. (생략)	· 도로법 제45조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43조	
	3. (생략)	3. (생략)	· 도로법 제46조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4조	
	4. (생략)	1~5. (생략)	· 도로법 제44조			1~5.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83조	
		1. (생략)	· 도로법 제40조, 제82조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38조	
		2. (생략)	· 도로법 제86조의 2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101조 2	
	5. (생략)	1. (생략)	· 도로법 제24조			5.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23조	
		2. (생략)	· 도로법 제44조제4항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101조 2	
	6. (생략)	1. (생략)	· 도로법 제40조, 제47조			6.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45조	
세 난 관리과	7. (생략)	1. (생략)	· 도로법 제47조, 제48조 · 동법시행령 제29조의 5, 제29조의 6	구청장		7.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45조	구청장
	8. (생략)	1~2. (생략)	(생략)			8.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세 난 안전과	1~2. (생략)	(생략)	(생략)	구청장	세 난 안전과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행정조치사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세외)	1. 위반건축물정비계획 수립 시행	· 건축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구청장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행정조치사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전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 현면식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충축에 한한다)	1. 위반건축물설정비계획 수립 시행	· 건축법 제7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구청장
		2.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및 지도 단속	· 건축법 제7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2.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및 지도 단속	· 건축법 제7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 위반건축물행정조치 (행정대집행· 계고·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79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106조 부터 건축법 제111조			3. 위반건축물행정조치 (행정대집행· 계고·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79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106조 부터 건축법 제111조		
	2. 공동주택 위반건축물에 관한 나漏의 권한	1. 공동주택 복리시설 (단지내상가등)의 무단 용도변경 및 중· 개축에 대한 지도(단속)· 감독	· 주택법 제59조 · 주택법 제9조			2. 공동주택위반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 복리시설 (단지내 상가등)의 무단 용도변경 및 중· 개축에 대한 지도(단속)· 감독	· 주택법 제59조 · 주택법 제9조	
	3. 건축물 허가·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상업지역은 재외하며 충축의 경우 허가· 신고전 충수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설)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3. 건축물 허가·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중축의 경우 허가· 신고 전의 충수 및 연면적으로 함)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에 관한 권한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20조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에 관한 권한	1.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	· 건축법 제20조	
	5.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1.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20조			5. 공작물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1. 공작물 등의 공작물을 축조 신고	· 건축법 제10조	
	6. 건축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 건축법 제38조			6. 건축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 건축법 제38조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교통 기획과	1. (생략)	1~4 (생략)	(생략)	구청장
	2. (생략)	1. (생략)	(생략)	
	3. (생략)	2. (생략)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1. (생략)	(생략)		
	2. (생략)		· 주차장법 제19조의4	
	3. (생략)		· 주차장법 제29조, 제32조	

구 分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교통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1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 제29조, 제32조	

구 分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대중 교통과	1~2. (생략)	(생략)	(생략)	구청장

구 分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 기관
녹색 교통과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